

결 의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85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 국민불편 유발 행정절차 개선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의 결 일 2020. 5. 11.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 국민불편 유발 행정절차 개선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5월 11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 국민불편 유발 행정절차 개선 -

2020. 5.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	---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	---

①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2
----------------------------------	---

② 보험전문인 자격증 취득시험 공인영어시험 대체 확대 ·	6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현장발급 기준개선	9
----------------------------	---

III. 조치사항	13
-----------------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 “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 1. 7. 대통령 신년사)
- ▶ “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민생분야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막겠습니다. ” (‘18. 11. 20.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 “ 정부는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 (‘19. 2. 12. 국무회의)

- 위원회는 그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제도개선 추진
 -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방안(‘18.6월) 수립 이후 총 135개 세부과제 제도개선 권고
-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국가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필요
- 과제발굴을 위해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 ‘국민소통창구’와 언론 보도·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을 적극 활용
 - 불합리·불평등·국민불편 등을 유발하여 개선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 3월 ~ ‘20. 4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 4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 5월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현행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의료인으로 제한**
 - * 의사·치과의사·한 의사·조산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 불가
- 의료인 및 비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라 하며, 일명 ‘**사무장병원**’ 으로 통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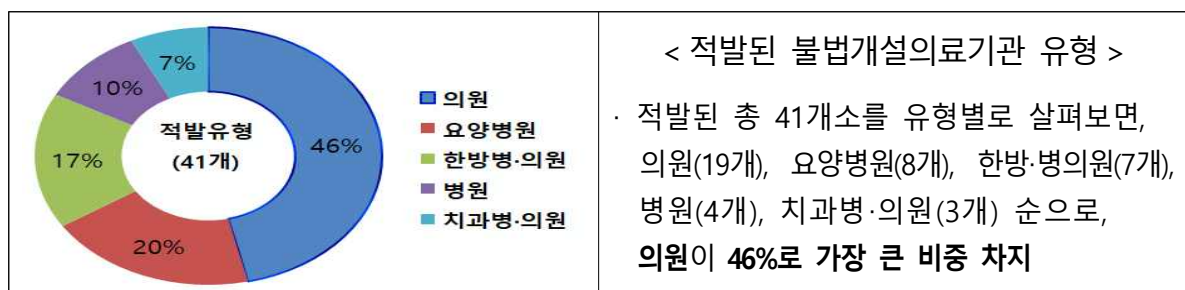
< 불법개설의료기관 현황 >

-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09년 이후 적발한 **불법개설의료기관** 1,273개소 중 비의료인(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례가 **94% 차지**

구분	의료기관 개설 불법내용	의료법 조문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받음 <빈발유형>	제33조제2항 위반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 법인 명의를 대여받음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의료인 또는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제4조제2항 위반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 개설	제33조제8항 위반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개설	제33조제10항 위반

출처: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보건복지부, '18.7월)

- ▶ ‘불법개설의료기관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권익위·복지부 건보공단 합동조사(19.8~11.)결과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출처: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20.1.17. 권익위 보도자료)

< 정상의료기관과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의료수준 비교 >

- ▶ (정상의료기관대비)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
 - 병실당 병상수 : 정상의료기관 2.62개 < 불법개설의료기관 4.57개 (1.95개 ↑)
 - 전체직원 대비 의료인 고용비율 : 정상의료기관 27.5% > 불법개설의료기관 18.2% (9.3% ↓)
- ▶ (정상의료기관대비) 높은 이직률
 - 의료인의 6개월내 퇴사 비율 : 정상의료기관 21.5% < 불법개설의료기관 45.1% (23.6% ↑)
- ▶ (정상의료기관대비) 과잉진료 가능성 높음
 -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 정상의료기관 901천원 < 불법개설의료기관 1,003천원 (102천원 ↑)
 - 진료건당 진료비 : 정상의료기관 151천원 < 불법개설의료기관 282천원 (131천원 ↑)
 - 입원일수 : 정상의료기관 33.0% < 불법개설의료기관 37.7%(4.7% ↑)

출처: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보건복지부, '18.7월)

□ 관련 법령

-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시, 비의료인과 이에 관여한 의료인(명의개설자)을 함께 처벌

* 처벌 : 징역 및 벌금의 벌칙,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제재

< 의료법 >

- ▶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때

□ 문제점

-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 한 경우, 자격정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규정이 있으나,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공동개설 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기준 부재
- 공동개설 및 운영의 경우, 실무상 제66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처분을 하나, 제66조제1항제2호*와 달리 자격정지 등의 명시적 처분근거가 없어 법률적 다툼 소지 및 행정처분 사각지대 존재

< 의료법 >

▶ 제66조(자격정지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제4조

- ▶ 별표2 개별기준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3개월

<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 미처분사례 >

< 뉴스기사(서울신문, '20.1.31.) >

- ▶ 유죄받은 100여곳, ‘사무장병원’ 복지부 행정처분 안해 계속 운영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과 의료인이 공동출자 운영하는 ‘동업형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관련, 처벌 사각지대에 놓임

< '19년 감사원 지적사항 >

- ▶ F는 비의료인 A로부터 출자(50%)를 받아 B한의원을 개설한 뒤 F는 환자치료를 전담하고, A는 직원 관리·재정 등 병원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동운영

→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5년) 도과로 정상 영업

- ▶ C는 비의료인 D로부터 출자받아 한의원을 개설·운영한 후 약정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

→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정상영업

< 불법의료기관 개설관련 판례 >

현재 법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판단

- ▶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의미** : 의료법 제33조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7도378 판결)
- ▶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개설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포함** :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도14360판결)
- ▶ **근거불분명으로 처분사유변경 인정사례**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처분의 근거법령을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33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 사유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2019.7.11.)

□ 개선방안(조치기한 : '21. 4.)

-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와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에 반영

현행	개선(안)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22)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생략)	22) ----(동일)----
	22의 2)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설)
	※ 법 제33조제2항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2 보험전문인 자격증 취득시험 공인영어시험 대체 확대

[금융위원회]

□ 현 황

- 보험전문인 자격증으로는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2개 종류가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을 규정하고,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관리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계리사시험) 및 제53조(손해사정사시험)

-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산정업무가 보험사업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경우, 피보험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도입**

< 손해사정사 자격 주요 사항 >

- ▶ (종류) 보험의 종류에 따라 4개(재물·차량·신체·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
- ▶ (자격증의 취득방법)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수습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취득

▶ (시험방법)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재물	차량	신체	재물	차량	신체
시험 과목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영어 (4종)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3종)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3종)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책임보험·근 로자재해보 상 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시험 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영어시험은 공인시험으로 대체			논술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해당 영어성적(토플, 토익, 텡스)을 등록하고, 영어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

- 보험계리사는 국내외 보험상품 관련제도를 조사하고,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자격증 취득자로 수학, 통계학, 재무이론, 확률 등의 지식을 적용해 개발된 보험상품에 적합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

< 보험계리사 자격 주요 사항 >

- ▶ (종류) 고용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로 구분
- ▶ (자격증의 취득방법)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수습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취득

▶ (시험방법)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시험 과목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시험 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영어시험은 공인시험으로 대체	논술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문제점

- 보험전문인 시험의 경우 3개 종류(토플, 토익, 텡스) 시험성적만 영어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 가중 및 수험 진입장벽 존재
- 5급·7급 국가공무원시험, 외교관후보자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 시험은 지텔프(G-TELP), FLEX 등의 성적도 영어시험 대체인정

<민원사례>

< 관련민원 >

- ▶ 손해사정사 취득을 위한 1차시험에서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텡스 3개만 인정. 국가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자격시험도 지텔프 등이 포함되는데, 손해사정사시험에도 영어시험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음. (국민신문고, '20.2)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19.12 >

- ▶ 수험생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 영어시험성적이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어성적인정 범위의 확대가 필요

< 참고 : 영어시험 대체 인증시험 및 인정기준 현황 >

구분	TOEFL		TOEIC	N-TEPS	G-TELP*	FLEX**
	PBT	IBT				
외교관 후보자	590	97	870	452	88	800
국가 5급	530	71	700	340	65	625
국가 7급	530	71	700	340	65	625
소방간부 후보생	490	58	625	280	50	520
경찰간부 후보생	490	58	625	280	50	520
변리사	560	83	775	385	77	700
공인회계사	530	71	700	340	65	625
공인노무사	530	71	700	340	65	625
세무사	530	71	700	340	65	625
감정평가사	530	71	700	340	65	625

* 지텔프(G-TELP,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로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이 주관하여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

** FLEX(FLEX, Foreign language EXamin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여 개발한 국가공인외국어능력시험

□ 개선방안(조치기한 : '20. 11.)

○ 보험전문인 시험도 기존 3개(토익, 토플, 텡스)의 영어성적 외에 지텔프(G-TELP), FLEX 등의 공인영어성적 대체 확대

- 보험전문인시험 수험생의 부담경감 및 국가공인자격증간의 형평성 도모

⇒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반영

□ 현 황

- 국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및 생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한부모가족이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부(父)'나 '모(母)'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가구원은 '부(父)'나 '모(母)' 외에 만 18세미만 자녀(취학 자녀의 경우 만 22세미만)
 -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여야 함
 -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못하는 손자를 키우는 조모, 조부 가정인 조손가족도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제4조(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한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국가는 기준 중위소득기준 60%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 입주지원, 가사서비스지원, 각종 공공요금감면, 문화·여가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2인가구 기준 1,795,185원
- 한부모가족은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이혼이나 미혼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예상
 - * '19년 기준 한부모가족 : 18만 3천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 3천 4백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단위: 가구, 명)

연도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5년	192,387	482,710	147,926	370,872	43,460	109,386	1,001	2,452
2016년	187,841	468,414	145,258	362,137	41,627	103,966	956	2,311
2017년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2018년	182,731	452,341	142,830	353,658	38,979	96,522	922	2,161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다양한 감면혜택 신청시 증명자료로 쓰여, 발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방문신청외에 무인발급기, 민원24에서도 발급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주거지원	다가구주택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지원	LH공사
정부양곡	2인가구 1개월에 20kg 1포 신청가능	주민센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	통신업체
전기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자동차 검사수수료 등 요금할인	해당공사
문화바우처 신청	문화바우처(연7만원)	주민센터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급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월 18만원/1인당	자녀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학원등록비, 학용품비 등)	청소년 한부모
고등학생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실비	고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 문제점

- 민원24, 무인발급기를 통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본인확인(공인인증)만 필요하나, 현장발급 시, 본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여 국민 불편 초래
- 반면, 가족이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증명서*는 현장발급시, 본인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권익위 실태조사('20.3)>

▶ 서울시 종로구

- '19년 기준 신청서 접수없이 발급 건수는 총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건수 **400건중 111건으로**, 실제 **별도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라, 별도 신청서를 계속 쓰게 하고 있음

▶ 서울시 강남구

- **발급신청서 기재내용이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므로,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 민원인에게 받은 신청서류는 보관만 하고 별도로 신청서를 관리하는 것도 아님

▶ 서울시 관악구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한부모가족증명서만 **신청서를 쓰게 한 다음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직원과 민원인에게 **이중 불편 발생**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1.)**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시, 수급자 본인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신분증만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반영

현행	개선(안)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u>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 한부모가족증명서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시설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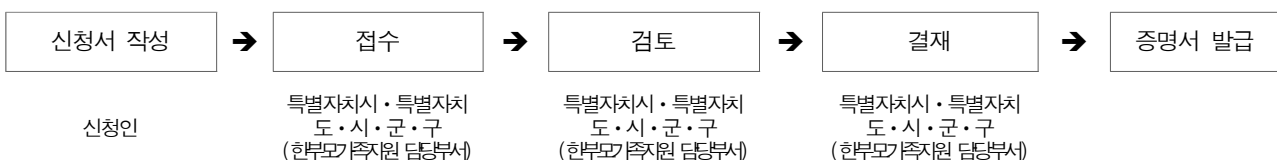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대상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마련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2 개별 기준'에 반영	보건복지부	'21.4월
보험전문인 자격증 취득시험 공인영어 시험 대체 확대	○ 보험전문인 시험에 기존 3개(토익, 토플, 텡스)의 영어성적 외에 다른 공인영어시험성적 대체 확대 ☞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1월
한부모가족증명서 현장발급 기준 개선	○ 한부모가족 수급자 본인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신분증만으로 증명서 발급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반영	여성가족부	'20.11월